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12. 2. / (총 18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미 라		044-202-1790
환자병상관리팀	담 당 자	안 제 현		044-202-1797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오 창 현		044-202-1780
환자시설팀	담 당 자	진 상 인		044-202-178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송 영 조		044-202-2450
진료지원팀	담 당 자	박 진 균		044-202-18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대입전형 집중관리기간 운영방향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대입 전형 집중 관리기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태져야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민들이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시설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세부 방역수칙이 있어야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서,
 - 각 부처에게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 업종별 방역수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무증상·경상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준비가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타** 지역으로의 확진자 이송 없이도 권역 내에서 환자 수용이 즉시 가능토록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확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 실내체육시설이나 다수가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GX류 시설 운영이 금지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이러한 실내체육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12월 2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26.~12.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0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1.9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317.3명으로 66.5%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의 유행 양상은 지난 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300명대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 (11.28.) 323명 → (11.29.) 263명 → (11.30.) 261명 → (12.1.) 255명 → (12.2.) 356명
 - 수도권 이외 지역은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남권 54.1명, 충청권 43.1명, 호남권 37.1명, 강원도 13.9명 등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환자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6.~12.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13.7명	43.1명	37.1명	8.6명	54.1명	13.9명	1.3명
60대 이상	59.7명	14명	3.7명	1.3명	18명	5.4명	0.3
즉시 가용 중환자실 (12.1.09시기준)	27개	3개	2개	4개	12개	5개	6개

- 최근 1주일(11.26.~12.2.)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717명**으로 **1일 평균 102.4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 (11.21.) 86명 → (11.23.) 79명 → (11.26.) 78명 → (11.29.) 76명 → (12.2.) 101명











- □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여 최근 2주간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그 외 권역별로 **12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재 **총 17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이 가운데 현재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치료병상은 44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5개를 합하면 총 59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 이에 더해,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의료진을 확보하여 이 30개 병상도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고,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원하여 확보한 병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62.5%, 67.4%로, 최근 환자 증가에 따라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12월 1일 기준 1,655병상의 여유가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 등을 통해 중등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 동안 5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 (11.1.) 3,908병상 → (12.1.) 4,438병상











- 생활치료센터는 12월 1일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16개소(정원 3,478명)를 운영**하고 있고, 오늘(12.2.) 중수본 지정 센터 한 곳을 추가 개소하였다.
 - 이에 더하여, 다음 주까지 경북권 권역 생활치료센터 1개소와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5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1,30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한편,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격리 해제기준*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 10여 일 동안 머물다 퇴소하고 있다.
 - * (격리 해제기준) ①확진 후 무증상 10일 경과 또는 ②확진 후 무증상 7일 경과 + PCR검사 두 번 연속 음성
 - 지난 2주간은 입소자가 퇴소자보다 많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주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소한 1,200여 명이 퇴소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입소/퇴소 : (11월 3주) 843명/263명, (11월 4주) 1,451명/476명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환자 발생 양상과 함께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선제적으로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2 │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 오픈

□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내 환자와 의료인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상태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격리 등을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다.
- □ 이러한 환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료인 사이의 감염을 막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우선 환자가 하루 2번 이상 생체측정장비*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생체신호(Vital Sign)와 임상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 * 체온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당계 등
 - 의료진용 시스템에서는 전체 환자의 생체신호를 한눈에 확인(모니 터링)할 수 있으며, 만일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알람을 제공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환자 상태 추이를 누적해서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환자용 앱과 연결하여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 정부는 12월 1일부터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여 12월 중으로 다른 생활치료센터에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2021년 2월까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전자의무기록 (EMR)시스템과 연계하고, 생체측정장비와 환자용 앱 간 블루투스 연동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 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1월 28일~11월 29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670천 건,** 비수도권 30,193천 건, 전국은 57,863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21일~11월 22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3.9**%(4,465천 건), **전국은 12.2**%(8,006천 건) **감소**하였다.
 - * 수도권 : (11.14.~15.) 35,890천 건 →(11.21.~22.) 32,135천 건 →(11.28.~.29.) 27,670천 건 전 국 : (11.14.~15.) 74,032천 건 →(11.21.~22.) 65,869천 건 →(11.28.~29.) 57,863천 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9%(8,220천 건), 전국은 21.8%(16,169천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25,043천** 건(8월 29일~8월 30일)**까지 감소**하였으며,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5.2% 감소**한 수치다.
 - * (8.15.~16.) 33,484천 건 → (8.29.~30.) 25,043천 건(△25.2%)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실시한다.
 - 우선 목욕장업의 이용 인원을 16㎡당 1명으로 제한하고, 놀이 공원과 워터파크에서의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이벤트·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침방울(비말) 전파 위험이 큰 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코너는 운영을 중단한다.
 -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 브런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판매할 때에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한편,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수능시험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중 희망자에 대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12월 2일(수)부터 12월 4일(금)까지 경기도 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3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자체 방역체계 및 관리계획 수립현황과 방역관리 자가점검표 이행실태 등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02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4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37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12명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73명이 입소(48%)하여 격리 중이다.
 -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격리 중인 수능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 이동지원이 필요한 수험생을 위한 **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수능 전일 늦은 시간 통보되는 자가격리자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 어제(12.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12월 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70개소,
 ▲PC방 1,021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73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8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 붙임 > 1.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 주요 내용
 - 2.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 3.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4.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 주요 내용

○ 환자용 앱





○ 환자는 일 2회 이상 스스로 생체측정장비를 통해 측정된 체온 등 생체신호(Vital Sign)를 환자용 앱에 입력

○ 의료진용 시스템



전체 환자의생체신호를 한눈에모니터링하고,이상 징후 시 알람을제공하는 대시보드



환자 상담 등 필요시환자용 앱과연계하여 화상진료실시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연	<u>-</u>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등)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춤추기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추가	▲ <u>집합금지</u> ▲ <u>시설 면적 8㎡당 1명</u> <u>인원 제한 강화</u> ▲ 노래·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u>음식 섭취 금지 추가</u>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스탠딩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 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수칙은 1단계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식당)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추가 ▲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u>음식 섭취 금지 추가</u>	▲ <u>21시 이후 운영 중단</u> <u>추가</u>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m ³ 당 1명	▲ <u>100명 미만으로 인원</u>	
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제한 추가	<u>제한</u>	
목욕장업	명단 관리, 환기·소독	▲ <u>시설 면적 4m²당 1명</u> 인원 제한 추가	▲ 시설 면적 8m³당 1명인원 제한 강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구분 1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영화관 공연장		▲ <u>다른 일행 간 띄워</u> <u>앉기 추가</u>	▶ 조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mark>다른 일행 간 띄워</mark> 앉기 추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 <u>시설 면적 4m[*]당 1명</u> <u>인원 제한 추가</u>	 ▲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m [*] 당 1명 <u>인원 제한 또는 한 칸</u> 띄우기 추가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 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u>다른 일행 간 띄워</u> <u>앉기 추가</u> ▲ <u>단체룸은 50%로 인원</u> <u>제한</u>	★ 조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 원 제한 추가	▲ <u>수용인원의 1/3으로</u> 인원 제한 강화	
	이·미용업		실 시간 구기 ▲ 시설 면적 4m ²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u>띄우기 추가</u>	▲ 시설 면적 8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u>띄우기 강화</u>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u>경륜·경마 등 20%</u> <u>인원 제한</u> ▲ <u>이외 시설 50% 인원</u> 제한	▲ <u>경륜·경마·경정·카지노</u> <u>운영 중단</u> ▲ <u>이외 시설 30% 인원</u> 제한 강화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 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집화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시업장, 종교시설	▲ <u>실외 스포츠경기장</u> <u>추가</u>	▲ <u>실내 전체, 실외 집회·</u> <u>시위장, 스포츠 경기장</u>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화축제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 회의에는 4m'당 1명 으로 인원이 제한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u>30% 이내로 관중</u> 입장	▲ <u>10% 이내로 관중</u>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u>밀집도</u>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u>기관·부서별 재택근무</u> ▲ <u>콜센터·유통물류센터</u> <u>환기·소독 의무화</u>	<u>확대 권고(예: 1/3 수준)</u>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2020.12.1.(화) 18:00 기준)

<단계상향(31): 광역(17)+기초(14)> ※ 광역 _____

	지역		단계조정(會)내용			
구분	권역	시도	기간/지	[역	조치 단계	^{(공화} 추가조치 내용
1		서울	<u>11.24.~12.7.</u>	서울 전지역	2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운동 금지
2	수도권	경기	<u>11.24.~12.7.</u>	경기 전지역	2	《(르네세퓩시크) 국글인 GA규 문등 급시 《(학원) 대입_외_관악기·노래강습_금지
3		인천	11.24.~12.7.	인천 전지역	2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운동 금지 ○(학원) 대입 외 관악기·노래강습 금지 ○(아파트) 헬스장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금지 ○(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행사 금지
4		세종	<u>12.1.~12.14.</u>	세종 전지역	1.5	∘(목욕장업, 피시방) 2단계 조치 적용 ∘(격렬한 GX류 운동) 22시 이후 운영 중단
5		대전	12.1.~12.14.	대전 전지역	1.5	_
6	ᅔᅯᄀ	충북	<u>12.1.~12.14.</u>	충북 일부지역	1.5	 (모임·행사) 2.5단계 기준 적용(50인↓) +농협등 만단체 선거운동 금지 타시도 기족과 방문 초청 지제 등(결혼장례식은 2단계 적용) (종교활동) 합창 등 노래행위 금지 (사회목지시설) 휴관(긴급 돌봄 등 제외)
	충청권		11.28.~12.14. (강화조치 12.1~3)	제천시	2	(입합금시) 유용시설5송, 실내제육시설, 오락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학원 독사실 등 (종교활동, 모임행사) 민간/공공 10인이상 금지
7		충남	12.1.~12.14.	충남 일부지역	1.5	(결혼·장례식장) 2단계 적용(100인↓)(목욕장,피시방) 음식섭취 금지(모임·행사) 2단계 적용(100인↓)
			12.1.~12.14.	충주시	2	·(국공립시설) 2.5단계 기준 적용
8		광주	12.1.~12.7. 11.19.~별도명령시	천안시 광주 전지역	1.5	-(0~05시 운영 중단))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식당: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격렬한 GX류 운동 •(음식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인원제한) 종교행사, 스포츠 경기, 공공시설 등
9	호남권	전북	11.23.~별도명령시 11.28.~별도명령시 11.30.~별도명령시 11.30.~별도명령시 12.1.~12.14.	전북 일부지역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이서면)	1.5 2 2 2 2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제한(50%↓)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경로당 외) - -
10		전남	<u>11.24.~12.7.</u> 11.20.~별도명령시	전남 일부지역 순천시	1.5 2	- ∘(일반관리시설) 인원제한(100인↓)
11		대구	12.1.~12.14.	대구 전지역	1.5	- (<u>acced</u> /a <u>a</u>) center(100e+)
12	경북권	경북	12.1.~12.14.	경북 전지역	1.5	-
13		부산	12.1.~12.14.	부산 전지역	2	∘(노래연습장) 초·중·고등학생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운동 금지 ∘(학원) 대입 외 관악기·노래강습 금지 ∘(사적모임) 10인이상 취고 강력권고
14	경남권	울산	<u>12.1.~12.14.</u>	울산 전지역	1.5	_
15)	경남	11.26.~12.9. 11.29.~12.12. 11.26.~12.9. 11.21.~12.4.	경남 일부지역 창원시 진주시 하동시	1.5 2 2 2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 -
16	강원	강원	12.1.~12.14. 12.1.~별도명령시 12.1.~별도명령시 12.1~12.7.	강원 일부지역 철원군 홍천군 원주시	1.5 2 2 2	- - -
17	제주	제주	<u>12.1.~12.14.</u>	제주 전지역	1.5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보도하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